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745 발의연월일: 2024. 12. 19.

발 의 자:김승원·박홍배·김현정

이원택 • 조계원 • 이건태

박균택 • 박지원 • 서영교

박해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피고인의 성명, 죄명, 공소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,「형사소송규칙」에서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'공소장일본주의'를 채택하고 있음.

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공소제기의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이 법제327조제2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공소장일본주의도 대법원 규칙이 아닌 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을 규칙에서 상향 입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보장이라는 형사소송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254조제6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, 그 밖에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254條(公訴提起의 方式과 公訴	第254條(公訴提起의 方式과 公訴
狀) ① ~ ⑤ (생 략)	狀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⑥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
	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
	있는 서류, 그 밖에 물건을 첨
	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
	<u>서는 아니 된다.</u>